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31호,  
제221168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순 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4 |
| 1. 수산 전담 제2차관 신설 .....           | 4 |
| 2. 부처별 해양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 7 |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211531호】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5. 07. 17.
3. 회부연월일 : 2025. 07. 18.

### 【의안번호 제2211680호】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07. 23.
3. 회부연월일 : 2025. 07.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2211531호】

현행법은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단일차관제로 해양, 수산, 해운·항만의 등의 정

책을 관장하고 있지만 해양, 해운·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되어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수입규모가 수출을 압도하며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어가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어촌은 초고령화 심화 및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보존,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사업이지만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 **【의안번호 제2211680호】**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감독, 수산업 육성·지원, 해운·항만·해사산업 육성·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 해양 관련 문화·레저·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 Ⅲ. 검토의견

#### 1. 수산 전담 제2차관 신설(제2211531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 업무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행정각부) ① (생략)                                                                                                                 | 제26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
| 1. ~ 19. (생략)                                                                                                                     | 1. ~ 19. (현행과 같음)                                                                |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u>국토교통부</u> 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②-----<br>-----<br>-----<br>-----<br>-----<br>-----<br><u>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u> 에는---.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기후위기와 어촌 인구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수산업을 국가 식량 안보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을 두고 수산 분야 관련 정책집행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입법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sup>1)</sup>

1) “해수부 수산 업무 강화 한 목소리”, KNN뉴스, 2025.7.18.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sup>2)</sup>와 함께 해양력 경쟁 시대에 해양, 해운, 조선·물류 등 해양 부문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sup>3)</sup>에서, 수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부내 기능 분산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수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정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정부의 복수차관제의 취지 및 필요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정부의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정경제부 등 4개 행정부처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시 복수 차관의 설치 여부는 부처별 내부 업무의 기능적 차이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복잡성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조직 및 예산 규모 등을 토대로 2개 이상 부처의 기능이 통합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된 것임.

2024년 12월 말 기준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있는바, 이들 7개 부처와 해양수산부의 조직(기구 및 정원) 및 예산 규모, 해양수산부 내부 업무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음.

---

2) “해양수도 부산 방향은 합격점…영업+현장 퍼즐 맞추는 차례”, 뉴스1, 2025.9.7., “부산시, 해수부 직원 지원에 771억원…이전사례 참고”, 연합뉴스, 2025.9.4.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3) “해양패권 경쟁시대… 근해 넘어 대양중심 전략을”, 서울신문, 2023.4.24., “해양력 경쟁 시대, 해양대 ‘글로벌’ 필수”, 내일신문, 2025.3.24.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먼저, 기구·정원 및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7개 부의 본부 인력 평균은 866명, 예산은 30조 원이나, 해양수산부 본부 인력은 624명, 예산은 6.78조 원으로 7개 부의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임.

[2024년 기준 복수차관 7개 부처 및 해양수산부의 기구·정원 및 예산]

| 구분        | 기구  | 정원    | 예산    |
|-----------|-----|-------|-------|
| 기획재정부     | 154 | 1,127 | 40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5  | 673   | 11조   |
| 외교부       | 123 | 940   | 3.8조  |
| 문화체육관광부   | 87  | 759   | 6.9조  |
| 산업통상자원부   | 77  | 650   | 9조    |
| 보건복지부     | 104 | 851   | 122조  |
| 국토교통부     | 116 | 1,062 | 23조   |
| 7개 부처 평균  | 105 | 866   | 30조   |
| 해양수산부     | 57  | 624   | 6.78조 |

주1. 기구·정원은 본부 기준, 기구는 실·국·과 단위

2. 과기정통부, 산업부의 경우 차관급 본부(과학기술혁신본부, 통상교섭본부) 규모 수치는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다음,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대상의 공간적 동일성으로, 해양·해운 분야와 수산 분야는 상호 연계하여 관련 정책이 융합 수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4)</sup>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복수차관 도입은 차관 통솔범위 과다 여부 및 해당 부처의 기능상 조직특성(이질성, 복잡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해운물류국은 해양운송 및 선박·선원 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나, 수산업·어업자원·어선안전 등 수산정책실 소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2. 부처별 해양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제2211680호)

개정안은 관광, 식품산업진흥, 공업·외국인 투자·에너지 등 각 부처의 기능 중 해양 관련 사무만을 분리하여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u>관광</u> ,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br>② ~ ④ (생략)                                           |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br>-----<br>----- <u>관광(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은 제외한다)</u> -----.<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u>식품산업진흥</u> ,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br>② ~ ⑥ (생략)                                                |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br>-----<br>----- <u>식품산업진흥(수산물산업진흥은 제외한다)</u> ,-----<br>-----.<br>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u>공업</u> · <u>통상</u>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u>투자</u> ,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u>에너지</u>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br>----- <u>공업(조선·해양플랜트는 제외한다)</u> ·---<br>-----<br>----- <u>투자(해양·수산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u> ,---<br>-----<br>--- <u>에너지(해양에너지는 제외한다)</u> ·----- |

| 현행                                                                                                                                                                                             | 개정안                                                                                                                                                                                                                                                                                                                                                           |
|------------------------------------------------------------------------------------------------------------------------------------------------------------------------------------------------|---------------------------------------------------------------------------------------------------------------------------------------------------------------------------------------------------------------------------------------------------------------------------------------------------------------------------------------------------------------|
| <p>② ~ ⑤ (생략)</p> <p>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u>해양정책</u>,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u>해운·항만</u>, <u>해양환경</u>,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 개발, <u>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u> 및 <u>해양안전심판에</u>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② . ③ (생략)</p> |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4조(해양수산부) ① -----<br/> -----<u>해양</u>-----<br/> -----<u>수산식품산업진흥</u>,<br/> <u>해운·해운물류·항만</u>, <u>조선·해양플랜트</u>, <u>해양에너지</u>, <u>해양·수산 외국인투자</u>, <u>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u>, <u>해양환경</u>-----<br/> -----<u>해양·수산과</u><br/> <u>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양성</u> 및 <u>해양안전심판</u>, <u>섬 관리에</u> -----<br/>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우리나라 해양 관련 업무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3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에 관한 사무,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업, 외국인 투자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단일 해양 분야에서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레저·관광 등 분야는 부처별로 달리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 및 효율성이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sup>5)</sup>

이에 개정안은 국가 해양력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고,<sup>6)</sup>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해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점<sup>7)</sup>을 감안할 때, 부처별로 분절된 해양 분야에 관한 사무를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해양 정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양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각 산업 내 연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별 수행체계와 기능 분리 가능성, 해양 기능 집적에 따른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9

5) “해수부 위상·기능 강화해야…2차관제 도입도”, KBS뉴스, 2025.6.18.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6)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물결』에서 2025년 한국이 세계 11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언하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지 못한 세 가지 요인으로 ‘농업 기반의 관료형 전통’, ‘해양 산업 소홀’, ‘창조적 계급 육성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음. 김길수, 「해양수산부 통폐합과 부산의 해양 특화 전략」(부산발전포럼 통권 제110호) 참조

7) 일본의 경우 2007.4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EU에서는 2007. 10. ‘통합해양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고, 중국은 2008년 2월 「국가 해양사업 발전계획요강」을 공표하고, 2011년 3월 「제12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2011~2015)」에 “해양발전 전략을 명시하였으며, 「국가 해양사업 발전계획요강」을 다시 승인하였음.